

친환경 건축자재
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
(HB마크)



단체표준명 : SPS-KACA0020-7174 친환경 건축자재



한국공기청정협회

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

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

[2016년 01월 01일 개정]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정관 제4조에 의거 주로 국내외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품질을 등급별로 인증함으로써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

건축물에 사용되는 일반자재(판, 패널 및 보드, 목재류, 바닥재, 벽지 등의 롤형태의 제품)와 페인트, 퍼티, 접착제, 실란트 등으로 구분하여, 다음과 같은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.

- ①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제품과 수입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①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또는 현장에 납품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다. (시제품 및 개발제품 은 제외)
- ③ ①②항 이외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 인증 할 수 있다.
- ④ 단, 건축자재 중 실내마감자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·부자재는 인증시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건축자재(Building Materials) : 건축물의 내장에 쓰이는 자재
- ② 시료(Sample) : 건축자재의 일부 또는 시험재료
- ③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: Volatile Organic Compounds) : 시험편에서 방출되어 방출시험챔버의 출구 공기에서 검출된 유기화합물로 정의한다. 이 규격에서 명기한 시험방법은 별도의 정의에 의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과 특정한 유기화합물의 범위에 적용한다. 어떤 제품에서는 시험평가를 하는 특정 VOCs를 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(Target Volatile Organic Compounds, 이하 대상 VOCs라 함)이라고 한다.
- ④ 알데하이드류(Aldehydes) : 시험편에서 방출된 방출시험챔버의 출구공기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와 Carbonyl 화합물(알데하이드, 케톤)로 정의한다.
- ⑤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: Tenax TA가 충전된 시료채취관으로 채취되어 n-헥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n-헥사데칸이 전부 나오는 시점까지의 범위에서 용리되고, 불꽃 이온 검출기(TVOC-FID) 또는 질량 분석계(TVOC-MS)에 의해 검출된, 크로마토그램에서 해당영역 안에 있는 봉우리들의 총 면적을 톨루엔으로 등가 환산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총 합.
- ⑥ 랜덤 샘플링 : 시험체 선정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모집단의 시험체중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.

제4조 (인증시험 및 인증기준)

- 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알데하이드류와 VOCs 에 대하여 시험하고, 그 시험결과는 [별표 1]에 인증심사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신청자가 요구 시 건축자재에서 함유된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 에 대해서 추가 시험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[별표 1]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 (인증시험 처리기간)

시험을 위한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시험 기간은 시험시료 채취일로부터 45일 이내

- ② 처리기간에서 법정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시험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 및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 (인증시험방법)

인증을 위한 시험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.

- ①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시험방법은 **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(ES 02131.1a)** 에 따른다.
- ② 납, 카드뮴, 수은 및 6가크롬 의 시험 방법은 **환경부 고시 제2009-202호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 인자 시험방법**에 따른다.

제7조 (인증절차)

협회는 시험 및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**[별표 2]** 에 따른다.

제8조 (인증 신청 서류 접수)

- ①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.)는 **[별지 1]**의 서식에 의해 단체표준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시험신청서 2부
 - 2.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
 - 3. 현장시방서 2부
 -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5. 카달로그/회사소개서 1부
 - 6. 인증서 사본(KS, ISO 등) 1부
 - 7. 사내표준 목차 사본 1부
 - 8. 원자재(수입)검사서 사본 1부
 - 9.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
 - 10. 제품/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
 - 11. 제품검사서(내/외부 성적서 가능) 1부
 - 12.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(해당시) 1부
 - 13.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② 협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받는다.

제9조 (파생모델)

- ①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**[별지1-1, 별첨 기]**의 서식에 의해 파생제품 신청서 및 리스트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정의 : 화학적 특성(구성원료 및 함량비 등)이 같고 물리적 특성이 다른 제품(두께, 모양, 색상 등), 인증제품과 판매원(처)이 다른 경우
- ③ 범위
 - 1. 인정 : 제품명이 같고 두께(인증제품 보다 얇은 제품) 및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
 - 2. 시험 : OEM제품 및 제품명, 모델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
 - 3. 파생제품 불인정 :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
- ④ 분류별 파생제품의 범위
 - 1. 바닥재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두께(인증제품 보다 얇은 제품), 모양, 색상 이 다른 경우
 - 2. 벽 지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모양, 색상 이 다른 경우
 - ※ PVC벽지의 경우 **[별첨 7]** 에 따른 PVC도포량 구분에 따라 파생모델 인정

3. 판 벨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두께(인증제품 보다 얇은 제품), 모양, 색상 이 다른 경우
 4. 접착제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색상 이 다른 경우
 5. 실란트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색상 이 다른 경우
 6. 페인트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색상 이 다른 경우
 7. 퍼 티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색상 이 다른 경우
 8. 기 타 : 제품명, 구성원료, 함량비 가 같고 두께(인증제품 보다 얇은 제품), 모양, 색상 이 다른 경우
- ⑤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이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확인시험실 시 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.
- ⑥ 파생제품에 대한 인정 및 시험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다.
- ⑦ ③의 2항에 따른 파생제품의 인증 시 제품별 인증마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 된다.

제10조 (수수료)

- 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[별표 3] 에 따른다.
- 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협회 규정에 따르며, 시험비용은 인증시험기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 (시험성적서,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의 사용 등)

- ① 협회는 심의 완료 후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[별지 2] 서식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.
- ② 시험성적서 교부 후 업체는 인증기준에 맞게 [별지 3] 서식 인증서 및 인증마크 신청서를 협회로 발송한다.
- ③ 협회에서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 신청서를 접수 후 [별지 4] 서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를 발급한다.
- ④ 인증업체는 인증마크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,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 임을 표시할 수 있다.
- ⑤ 인증마크의 사용 및 서류, 홍보자료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[별표 5] 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에 따른다.

제12조 (인증 계약기간)

- ① 협회는 인증업체와 단체표준 업무규정 [별지 19] 서식에 의거하여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다.
- ②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.

제13조 (표시사항)

- ① 인증 받은 제품, 포장 등에는 [별표 4] 의 표시사항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.
-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.

제14조 (시판품 조사)

- ① 협회에서는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판품 조사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②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때는 [별지 5] 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수거된 제품시험의 수수료는 협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1항에 의한 시험결과 및 소비자단체 등 납품수요처인 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결과가 부적합 시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, 업체는 단체표준 업무규정 [별표 3] 처분기준에 따라 인증 취소가 된다.
- ⑤ 시판품조사 선정기준은 단체표준 운영규정 내규에 따른다.

제15조 (부칙)

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접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- ①(시행일) 이 규격은 2003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②(시행일) 이 규격은 200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③(시행일) 이 규격은 200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④(시행일) 이 규격은 2003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⑤(시행일) 이 규격은 200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⑥(시행일) 이 규격은 2005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⑦(시행일) 이 규격은 200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⑧(시행일) 이 규격은 2005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⑨(시행일) 이 규격은 200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전면개정)
- ⑩(시행일) 이 규격은 2007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⑪(시행일) 이 규격은 200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⑫(시행일) 이 규격은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⑬(시행일) 이 규격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⑭(시행일) 이 규격은 2012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⑮(시행일) 이 규격은 2014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- ⑯(시행일) 이 규격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